



|  |   |
|--|---|
|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  |   |
| <b>희귀질환자 → 접수 → 소득·재산조사 → 검토</b><br><b>→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결정 → 결정사항 통보</b> |   |
| 작성<br>요령   | <p>1.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(동거인은 제외)로서,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또는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</li> </ul> </li> <li>-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</li> <li>•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, 30세 미만의 미혼부·모인 경우,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</li> </ul> </li> <li>•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2.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양의무자의 범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자(환자)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·딸 등)</li> <li>• 신청자(환자)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(며느리 등)</li> </ul> </li> <li>-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</li> <li>•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</li> <li>•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 2촌 이내의 혈족<sup>2)</sup></li> </ul> </li> </ul> |
| 구비<br>서류   | <p>1. 환자 제출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확인서 등(해당자에 한함,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</li> <li>2)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를 기준으로 제출)<sup>3)</sup></li> <li>3) 신청자(환자)의 통장사본</li> <li>4)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<sup>4)</sup>(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 특례 등록확인으로 같음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시에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5)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(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,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</li> <li>6)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</li> </ol> <p>2. 부양의무자 제출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</li> <li>2)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</li> <li>3)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</li> </ol> <p>3.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<sup>5)</sup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사회보장 자격확인(건강보험, 의료급여)</li> <li>2) 주민등록등본</li> <li>3) 소득·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4) 금융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</li> </ol>   |

- 2)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외한 기준은 환자가구 기준 적용
- 3)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.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
- 4)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.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(단,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)
- 5)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